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신청안내

2019. 5. 22.

한국환경공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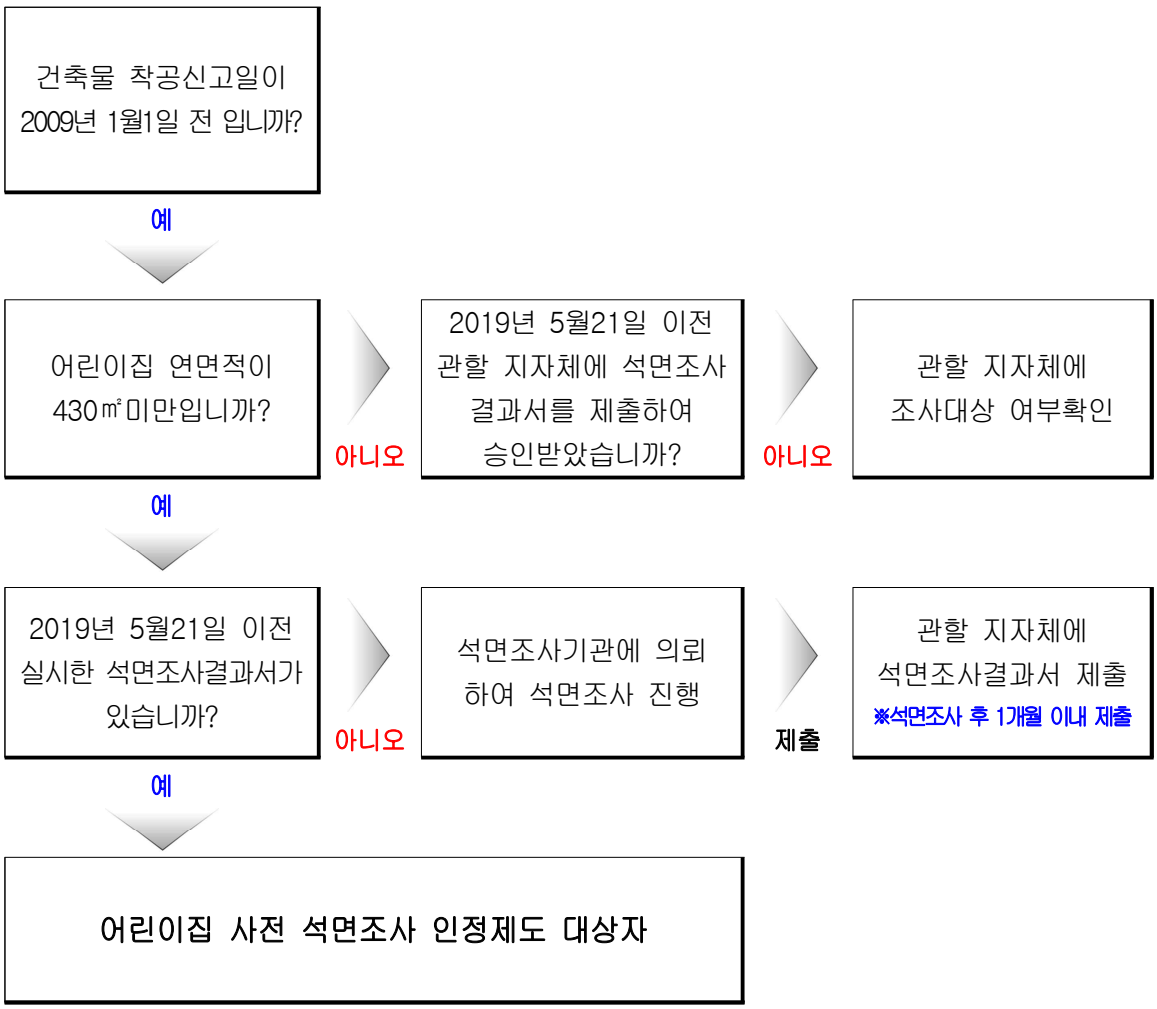
1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대상확인

1.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란?

-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포함 **이전에 받은 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 석면조사로 인정**받기 위한 절차.

2.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대상자

- ①2019년 5월21일 이전 석면조사를 완료한 ②건축물 착공신고일이 2009년 1월1일 전이며, ③연면적 430㎡미만 어린이집(3가지 조건 충족해야함)



※ 2019년 5월21일 이전 : 5월21일 포함.

※ 인정제도 관련 문의는 관할 지역환경청, 석면조사대상 관련문의는 관할 지자체, 기타 문의는 석면관리 도움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인정제도 및 조사대상 관련 자주하는 질문 >

① 석면조사 제외대상 및 인정제도 제외대상이 궁금합니다.

⇒ 1) 건축물 착공신고일이 2009년 1월1일 이후인 건축물

2) 연면적 430㎡이상으로 관할 지자체에 석면조사결과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

※ 석면조사대상 관련문의는 관할 지자체

② 인정제도 및 석면조사 제외대상입니다. 별도로 승인 받아야하나요?

⇒ 별도로 제출하거나 승인받는 절차는 없습니다.

③ 연면적 430㎡미만 어린이집입니다. 5월21일 이전,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제출 하여 식별번호 및 확인증이 있습니다.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?

⇒ 제출해야 합니다. 5월21일 이전,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제출한 430㎡미만 어린이집들은 법적으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.

신규 회원가입을 하여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기존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아이디 사용불가

④ 연면적 430㎡이상 어린이집입니다. 5월21일 이전,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제출하여 승인된 상태입니다. 다시 제출해야하나요?

⇒ 제출대상이 아닙니다.

⑤ 석면조사기관 명단을 알고 싶습니다.

⇒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접속 후 [공지사항]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⑥ 2019년 5월22일 이후 석면조사를 받았습니다. 인정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?

⇒ 인정절차 없이 관할지자체에 석면조사결과서 제출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.

온라인제출인 경우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가입하여 석면조사결과서 등록 후 정부24(www.gov.kr)에 민원 접수진행.

2 온라인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신청

1.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회원가입(http://asbestos.me.go.kr/)

※ 건축물소유자 유형별 확인방법과 필요한 첨부파일은 다음페이지 참고

1)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 유형 확인 후 선택하여 가입진행

- 건축물소유자를 확인하여 개인/법인/행정기관 中 선택하여 가입
- 건축물대장 무료발급 : 세움터(www.eais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



- 첨부파일은 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건축물대장과 건축물소유자 사업자등록증 첨부
- "신청서 제출(회원가입완료)" 후 로그인하여 어린이집인정절차 진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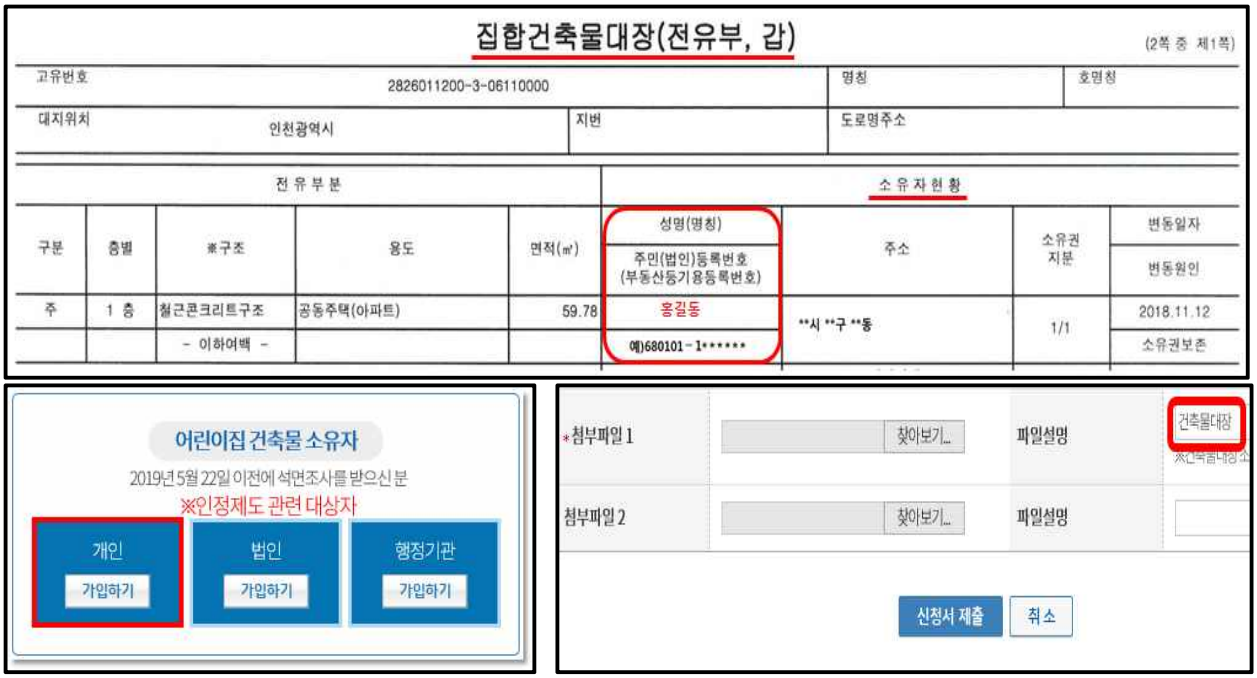


※ 건축물소유자 유형 선택과 첨부파일이 잘못된 경우 반려가 됩니다.

※ 3개월 이내 발급된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유형1) “어린이집이 상가, 빌라, 아파트 등에 위치한 경우”

<집합건축물대장(전유부) 발급>



집합건축물대장(전유부, 갑)

(2쪽 중 제1쪽)

고유번호	2826011200-3-06110000	명칭	호명칭
대지위치	인천광역시	지번	도로명주소

전유부분					소유자현황			
구분	층별	※구조	용도	면적(㎡)	성명(명칭) 주민(법인)등록번호 (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)	주소	소유권 지분	변동일자 변동원인
주	1 층	철근콘크리트구조	공동주택(아파트)	59.78	홍길동 예)680101 - 1******	**시 **구 **동	1/1	2018.11.12 소유권보존
		- 이하여백 -						

- 회원가입 유형선택 : 어린이집건축물소유자 “개인” 선택
- 회원가입 첨부파일 : 집합건축물대장(전유부) 첨부

※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 유형에 해당하는 “법인”,“행정기관”을 선택해야 함.

유형2) “어린이집이 일반건축물, 단독건물 등에 위치한 경우”

<일반건축물대장(갑) 발급>

일반건축물대장(갑) (2쪽 중 제1쪽)

고유번호			명칭	호수/가구수/세대수
				0호/0가구/0세대

대지위치	지번	도로명주소
인천광역시		인천광역시

※대지면적	연면적	※지역	※지구	※구역
㎡	1,390.24㎡			

※건폐율	※용적률	높이	지붕	부속건축물
%	%	12.6m	(철근)콘크리트 평스라브	동 ㎡

※조경면적	※공개 공지·공간 면적	※건축선 후퇴면적	※건축선 후퇴거리
㎡	㎡	㎡	m

건축물 현황 / 소유자 현황

구분	층별	구조	용도	면적(㎡)	성명(명칭) / 주민(법인)등록번호 (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)	주소	소유권 지분	변동일 / 변동원인
주33	지1	철근콘크리트구조	노유자시설(기계실)	89.44	**재단/ **법인/ **시/ **교육감	인천광역시	1 / 1	2018.05.01
주33	1층	철근콘크리트구조	노유자시설(직장보육시설)	280.84	**			소유자등록

- 회원가입 유형선택 및 필요 사업자등록증 안내



<재단, 법인 등이 소유한 경우>

⇒ 어린이집 건축물소유자 **“법인”** 선택

⇒ **재단, 법인 사업자등록증** 첨부

(소유자가 본점인 경우 본점 사업자등록증 필요)



<행정기관 등이 소유한 경우>

⇒ 어린이집 건축물소유자 **“행정기관”** 선택

⇒ **행정기관 사업자등록증** 첨부

※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“개인”으로 선택 사업자등록증은 미첨부

※ 건축물 소유자 사업자등록증 첨부(어린이집 고유번호증 첨부시 반려됨)

유형3) “공동소유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인 경우”

<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(을) 발급>

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(을) 건축물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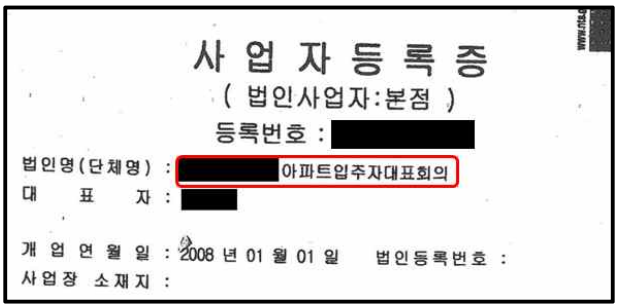
(16쪽 중 제6쪽)

고유번호		명칭	특이사항
대지위치 부산광역시	지번	도로명주소	부산광역시 [redacted]

건 축 물 현 황

구분	건축물명칭(번호)	도로명주소	건축물 주구조	건축물 지붕	층수	용도	연면적(㎡)	변동일	변동원인
주77	[redacted]	부산광역시 [redacted]	철근콘크리트구조	(철근)콘크리트	1/23	어린이집	238	2001.06.21	신축
주78	[redacted]	부산광역시 [redacted]	철근콘크리트구조	(철근)콘크리트	1/25	관리노인정	1,035.57	2001.06.21	신축
주79	[redacted]	부산광역시 [redacted]	철근콘크리트구조	(철근)콘크리트	1/25	관리사무소	92.238	2001.06.21	신축





- 회원가입 유형선택 : 어린이집건축물소유자 **“법인”** 선택 후 **입주자대표회의 명**으로 가입
- 회원가입 첨부파일 : **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자등록증** 첨부

2.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신청

2-1) 로그인 이후 “어린이집 인정절차신청” 클릭



2-2) 신청서 작성 후 신청(접수)



- 조사결과 : 조사결과 있음 선택
- 석면건축물여부 : 석면조사결과 **석면면적 50㎡이상인 경우** 석면건축물 선택
- 석면건축물여부 확인방법 : 석면조사결과서 내용중 **“석면함유 건축자재 합계”**와 같이 석면면적이 기재된 부분 확인

※ 석면조사결과서는 전체파일 첨부(일부만 첨부시 반려됨)

※ 석면지도가 별도로 있는 경우 추가로 첨부해야 함.

<회원가입 및 인정제도 신청 자주하는 질문 >

① 회원가입시 주소입력이 되지 않습니다.

⇒ Internet Explorer 11버전 이상 또는 크롬(chrome)브라우저에서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
② 건축물대장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가요?

⇒ 세움터(www.eais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에서 무료발급 가능합니다.

③ 건축물 소유자와 어린이집 대표가 다른 경우 제출은 누가해야 하나요?

⇒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신청 및 후속되는 모든 신청은 **건축물 소유자가 진행**해야 합니다.

※제2조(어린이집 등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특례)

① **건축물의 소유자**는 (생략)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**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.**

③ (생략)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**건축물의 소유자는 인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**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**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**하여야 한다.

④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입니다. 회원가입 방법이 궁금합니다.

⇒ 회원가입은 건축물소유자(법인)을 선택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. 건축물대장(총괄표제부)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.

⑤ 지자체 행정기관 소유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. 회원가입 방법이 궁금합니다.

⇒ 건축물 소유자가 지자체인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어린이집건축물소유자(행정기관)를 선택하고 지자체명으로 가입해야 합니다. 첨부파일은 건축물대장과 지자체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기타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.

⑥ 가입유형 선택을 잘못했습니다. 변경할 수 있나요?

⇒ 신규로 재가입해야 합니다.

다만, 동일한 아이디를 사용하려면 기존아이디는 탈퇴해야 합니다.

⑦ 회원가입 서류(건축물대장, 사업자등록증)를 보완하고 싶습니다.

⇒ 회원정보수정메뉴에서 첨부된 파일 삭제 후 재등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

3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신청결과 확인

1.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[어린이집인정절차현황] 메뉴에서 '상태' 확인

1-1) 인정신청 결과가 "최종승인"인 경우 지자체 민원접수 진행



※ 신청결과는 문자통보(회원가입시 기재한 번호)

※ 인정통보 받은 후 1개월이내 지자체 민원접수를 진행해야 함.

1-2) 불인정인 경우

- 자료보완이 가능한 경우 : 자료 보완 후 인정절차 재신청
- 재조사를 받아야하는 경우 : 석면조사 재실시 후 인정절차 없이 관할 지자체에 민원접수 진행(정부24 - www.gov.kr)

< 자주하는 질문 >

① 결과통보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
⇒ 결과통보까지 1~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.

※「행정절차법」제11조에 따라 기술검토 기간(인정여부 심사)은 민원처리 기간에 미산입

② 실수로 동일 어린이집 인정절차 접수를 2번하여 인정통보를 2번 받았습니다. 다음 단계인 지자체 민원접수도 2번해야 하나요?

⇒ 지자체 민원접수는 1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.

4 석면조사결과서 지자체 민원접수

1. 석면조사결과서 민원접수 진행

1) 온라인 접수방법 - 정부24(www.gov.kr)

- 정부24 접속 후 “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서” 검색하여 신청
- 준비자료 : 건축물 식별번호



2) 오프라인 접수방법

- 관할 지자체 민원접수

※ 자세한 제출방법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.